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

No. 2022-

소관부서	시행년도	행정상 조치	재정상 조치		신분상 조치
			조치방법	금 액(원)	
◎처	2022년도	부서 "권고"	-	-	-

제목: 「2021년 외부강의등 실태점검」 및 「특정감사」 결과 처분
(**"겸직허가 업무지침" 제정 권고**)

1 배경 및 필요성

○ 「2021년 외부강의등 실태점검」 및 「특정감사」 결과, 외부기관 각종 위원회 겸직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바 겸직허가에 대한 **유형별 허가기준이 없고** 겸직자에 대한 복무규율이 없어 **근태관리가 미흡함**

○ 심의, 심사, 위원회 참석 등 '외부강의 등' 에 해당되더라도 '겸직허가'를 받을 수 있고 '겸직허가'를 받을 경우 '외부강의 등' 신고의무 면제, 강의횟수 불산입 등으로 부분별하게 겸직허가를 할 경우 복무관리에 한계가 있음.

○ 복무관리 및 부패예방차원에서 겸직허가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 등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

2 주요내용

○ 겸직허가 대상자, 겸직 허가권자, 유형별 겸직허가 기준, 근태관리 방안 등

3 조치사항 : '겸직허가 업무지침' 제정 권고(◎처). 끝.

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

No. 2022-

소관부서	시행년도	행정상 조치	재정상 조치		신분상 조치
			조치방법	금 액(원)	
◎처 소속 (전 ☆)	2022년도	-	-	-	"훈계"

제목: **2021년도 외부강의 및 대가수수 관련 특정감사**

1. 개요

○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35조(시행세칙의 준수여부 점검)에 의거, 공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및 대가 수수와 관련,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과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운영지침 준수실태를 매년 하반기 1회 점검하고 있으며, '21년도 점검대상 기간('20.10.01.~ '21.09.30.)중 외부강의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점검 결과, 규정 위반으로 파악된 직원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.

○'21년도 외부강의 및 대가수수 관련 준수실태 특정감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.
- 감사대상 기간 : '20.10.01 ~ '21.09.30.
- 중점 감사항목 : ① 신고기한 및 신고의무 준수여부
② 복무처리 적정성(근무시간중 외부강의 여부 등)
③ 외부강의 대가 준수여부

2. 외부강의 및 교육훈련 관계 규정

□ 외부강의 정의(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1항)

○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1항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을 외부강의로 정의하고 있다.

□ 외부강의 신고의무(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2항)

○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2항에 의할 경우,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(외부강의 신고서)에 의하여 부서장(신고자가 부서장 이상인 경우에는 직상급자)의 결재를 득하여, 청탁방지담당관(청렴감사실)에게 그 외부강의 등 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□ 장단기위탁 교육훈련 규정 (교육훈련규정 제 15조 제 2항)

○교육훈련규정 제 15조 제 2항은 장·단기위탁교육 참가자는 지정된 교육 기일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계결근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3. 위법부당 내용

□ 교육훈련규정 제 15조 제 2항(교육기일 준수) 위반

○피감사인은 '21.01.22.일자로 '21.02.22~'21.12.31. 기간동안 장기교육 인사발령을 받았다.

○피감사인은 장기교육 중, 교육이 있는 '21.09.23.일 외부강의에 참석하였으며, '21.09.23.일의 교육일정은 아래와 같다.

구분	교육일정		
차시	1차시	2차시	3차시
시간	09:30~10:50	11:10~12:30	13:40~15:00
과목	교양	교양	어학

○피감사인은 교육일인 '21.09.23.일 당일 오전 09시20분경 ◇◇공사로부터 외부강의 관련 평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음을 통지 받았고 당일 참석을 요청받자, 교육훈련규정 제 15조 제 2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차시를 마친 후, 결강을 하여 외부강의에 참석함으로서 교육훈련규정 제 15조 제 2항을 위반하였다. (외부강의 시간은 '21.09.23.일 12:00~18:00 이다)

□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2항(신고기한 준수) 위반

○피감사인은 교육일인 '21.09.13.일 교육을 결강하여 ◇◇공사 주관 인천 ㅍ 공동주택 용지 특별공급 공모서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외부강의 실시(외부강의시간 12:00 ~18:00)후, 신고기한인 외부강의를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인 '21.09.23.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, 신고기한 기준 21일이 지연된 '21.10.15.일에 청렴감사실에 외부강의를 신고하여,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2항을 위반하였다.

외부강의 실시일	청렴감사실 신고기한	그룹웨어 MIS 등록일	청렴감사실 신고일
'21.09.13.	'21.09.23.	'21.10.01.	'21.10.15.

4. 처분요구내용

○피감사인은 장기교육 중 교육일에 사전승인없이 결강하여 교육훈련규정 제 15조 제 2항을 위반하였고, 교육을 결강하여 실시한 외부강의 신고를 지연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2항을 위반하였다.

○피감사인은 직전년도인 '20년도 외부강의 등 신고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, 외부강의 관련 4건의 규정위반이 확인되어 "주의" 처분 받은 바 있으며,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순번	규정위반	내용	외부강의 실시일
1	신고기한 미준수	△△ 외부강의	'20.09.17.
2	외부강의 미신고	○○공사 자문위원 참석	'20.07.01
3	외부강의 미신고	○○공사 자문위원 참석	'20.07.22.
4	외부강의 미신고	○○공사 내부규정 서면자문	'20.07.29~08.04.

○피감사인은 '20년도 외부강의 관련 규정위반으로 "주의" 처분을 받았음에도,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, '21년도에도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반복하여 위반(신고기한 미준수 등) 하였음은 물론, 교육중에 사전승인 없이 결강하여 외부강의를 실시하는 등

공사 취업규정 제 6조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의 정도가 "주의" 로 그치기에는 경하다고 판단되어, 직원훈계 등 처분에 관한 시행세칙 제 6조 (처분사유) 제 1호 (제반복무규정 또는 사장의 지시·규정·시행세칙 등을 위반한 때)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어 "훈계" 처분한다. 끝.

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

No. 2022-

소관부서	시행년도	행정상 조치	재정상 조치		신분상 조치
			조치방법	금 액(원)	
■처 ◆부	2022년도	-	-	-	"훈계"

제목: **2021년도 외부강의 및 대가수수 관련 특정감사**

1. 개요

○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35조(시행세칙의 준수여부 점검)에 의거, 공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및 대가 수수와 관련,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과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운영지침 준수실태를 매년 하반기 1회 점검하고 있으며, '21년도 점검대상 기간('20.10.01.~ '21.09.30.)중 외부강의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점검 결과, 규정 위반으로 파악된 직원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.

○'21년도 외부강의 및 대가수수 관련 준수실태 특정감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.
- 감사대상 기간 : '20.10.01 ~ '21.09.30.
- 중점 감사항목 : ① 신고기한 및 신고의무 준수여부
② 복무처리 적정성(근무시간중 외부강의 여부 등)
③ 외부강의 대가 준수여부

2. 외부강의 관계규정

□ 외부강의 정의(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1항)

○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1항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을 외부강의로 정의하고 있다.

□ 외부강의 횟수제한 (임직원행동강령 시행세칙 제 24조 제 7항)

○임직원행동강령 시행세칙 제 24조 제 7항은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정 제11조(겸직금지)를 준용하여 관련된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□ 근무시간내 외부강의 실시(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24조의 3)

○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24조의3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·회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,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외부강의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.

3. 위법부당 내용

□ 외부강의 횟수제한 위반 (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7항)

○피감사인은 21년 8월 외부강의 관련,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24조 제 7항에 따른 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부강의 월 3회를 초과하여, 월 4회의 외부강의를 실시하였다.

○'21년 8월의 피감사인의 외부강의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.

외부강의 실시일	횟수	신고유형	대가
21년 8월 4일	제안서평가 3회	일괄신고	900천원
21년 8월 26일	제안서평가 1회	개별신고	520천원

○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◎◎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외부강의 일자	활동 유형	횟수	시간	회의명 및 주요내용	대가
'21.08.04	심사	3	13시~18시	서울 ㅃ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 제안서 평가(3회)	900천원
'21.08.26	심사	1	14시~17시	충주 ㅆ 도시개발사업 지구 조사설계 용역종합 기술서 제안서 평가	520천원

4. 처분요구내용

○피감사인은 사장의 허가없이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를 실시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7항(월 3회 초과시 사장 허가)을 위반하였다.

○피감사인은 직전년도인 '20년도 외부강의 등 신고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, 외부강의 관련 2건의 규정위반이 확인되어 "주의" 처분 받은 바 있으며, 관련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순번	규정위반	내용	외부강의 실시일
1	근무시간중 외부강의 (시간제휴가 미처리)	○○공사 자문위원 참석	'20.06.12.
2	외부강의 미신고	○○공사 내부규정 서면자문	'20.07.29~08.04.

○피감사인은 '20년도 외부강의 관련 규정위반으로 "주의" 처분을 받았음에도,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고, '21년도에도 외부강의 관련 규정을 반복 위반하여

공사 취업규정 제 6조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처분의 정도가 "주의" 로 그치기에는 경하다고 판단되어, 직원훈계 등 처분에 관한 시행세칙 제 6조 (처분사유) 제 1호 (제반복무규정 또는 사장의 지시·규정·시행세칙 등을 위반한 때)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어 "훈계" 처분한다. 끝.

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

No. 2022-

소관부서	시행년도	행정상 조치	재정상 조치		신분상 조치
			조치방법	금 액(원)	
□단 ◇부(△)	2022년도	"외부강의 6개월간 제한"			**"감봉 1개월"**

제목: **2021년도 외부강의 및 대가수수 관련 특정감사**
(□단 ◇부(△) A 과장)

1. 개요

○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35조(시행세칙의 준수여부 점검)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및 대가 수수와 관련,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과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운영지침 준수실태를 매년 하반기 1회 점검하고 있으며, '21년도 점검대상 기간('20.10.01.~ '21.09.30.)중 외부강의 실적이 있는 직원에 대한 점검 결과, 규정위반으로 파악된 직원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.

○'21년도 외부강의 및 대가수수 관련 준수실태 특정감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.
- 감사대상 기간 : '20.10.01 ~ '21.09.30.
- 중점 감사항목: ① 신고기한 및 신고의무 준수여부
② 복무처리 적정성(근무시간중 외부강의 여부 등)
③ 외부강의 대가 준수여부

2. 관계 법령 및 규정

□ 외부강의 정의

○부정청탁금지법 제 10조 제 1항은 외부강의에 관하여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.

□ 외부강의 신고의무

○부정청탁금지법 제 10조 제 2항은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.

○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2항에 의할 경우,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(외부강의 신고서)에 의하여 부서장(신고자가 부서장 이상인 경우에는 직상급자)의 결재를 득하여, 청탁방지담당관(청렴감사실)에게 그 외부강의 등 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□ 외부강의 제한

○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4항은 사장은 제 24조 제 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□ 외부강의 복무기준

○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24조의3(근무시간 내 외부강의·회의 등 금지)은 근무시간내 외부강의·회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.(휴가 사용 시에는 가능)

□ 외부강의 횟수제한

○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24조 제7항은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정 제11조(겸직금지)를 준용하여 관련된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3. 사실관계

○□단 ◇부 △ A 과장(이하 "피감사인" 이라 한다)은 '21년도 외부강의 점검대상기간 중 □□에 대한 29건(외부강의신고서 개별기준)의 외부강의를 실시하여 총 4,948,878원(세후) 대가를 수수하였다.

○피감사인의 외부강의 형태는 29건중 2건(대면자문)을 제외하고 토질에 관한 서면검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.

○피감사인의 외부강의실적 29건에대한 규정위반 준수여부 확인결과, 근무시간중 외부강의 실시(서면검토결과 입력) 및 허위보고, 외부강의 신고기한 지연, 외부강의 횟수제한 등의 위법부당한 규정위반이 적발되었다.

○피감사인은 □□ 전산시스템에 서면검토결과를 입력하였고, 서면검토 결과 입력은 서면검토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외부강의에 있어서 외부강의의 대가를 수수하는 근거가 되며, 서면검토 결과를 입력함으로서 외부강의가 완료되는 필수 과정이다.

4. 위법부당 내용

□ 근무시간중 외부강의 실시(근무중 외부강의 관련 서면검토결과 입력)

○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24조의3(근무시간 내 외부강의·회의 등)은 근무시간내 외부강의·회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.

○피감사인은 □□으로부터 요청받은 서면검토 의뢰건을 □□으로부터 ID와 PW를 부여받아 □□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.

○피감사인의 서면검토 전산입력일자 및 입력상세시간을 파악하기위하여, □□으로부터 공문으로 회신받은 결과, 피감사인은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 실적 총 29건중 6건을 근무시간중에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○공문을 접수한 후, '21.12.13.일 □□ 담당자와 추가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①"전산입력일자 및 입력상세시간"은 □□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피감사인의 최종 입력시간임.

②검토기한은 피감사인이 서면검토결과를 입력하여야 하는 기한 임. (□□이 피감사인에게 서면검토 의뢰 시 지정함)

③피감사인이 각 프로젝트의 검토기한을 지연하여 서면검토결과를 입력한 사례는 없음.

○피감사인의 근무시간중 외부강의관련 서면검토결과 입력현황

순번	프로젝트명	전산입력일자 입력상세시간
1	강릉 ㄱ동 ㄴ공원 공동주택 개발사업	'21.06.10 15:47 (검토기한: '21.06.11 14시)
2	ㄷ ㄹ구역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공사	'21.05.07. 11:31 (검토기한: '21.05.07 14시)
3	ㅁ로 ㅂ구역 ㅅ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	'21.04.01. 11:20 (검토기한 :'21.04.02 14시)
4	ㅇ ㅈ ㅊ 오피스텔 신축공사	'21.03.11. 11:14 (검토기한 : '21.03.12 14시)
5	ㅋ동 ㅌ,ㅍ 주거복합 신축공사	'20.12.09. 17:14 (검토기한 : '20.12.10 14시)
6	ㅎ선 복선전철 ㄲ공구 건설공사	'20.10.14. 09:02 (검토기한: '20.10.15 14시)

*□□ 회신내용은 프로젝트명과 전산입력일자,입력상세시간만 있음

*검토기한은 □□ 전산시스템에서 피감사인의 ID와 PW로 로그인한 후, 각 프로젝트별 상세내역을 조회하면 볼 수 있음

○피감사인은 상기 6건의 외부강의 관련 서면검토결과 입력을 근무시간 중에 하였음을 인정하였다.

○피감사인은 서면검토는 근무시간 외에 하였고, 1건의 서면검토를 하기 위하여는 약 1시간이 소요되며, 서면검토결과를 타 파일에 저장을 한 뒤, 근무시간중에 서면검토결과를 「복사하여 붙여넣기」를 하였고, 해당 「복사하여 붙여넣기」하는데에 각 건당 약 5분~7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하였다.

○약 1시간 소요되는 서면검토를 근무시간외에 한 후, 약 5분~7분 정도에 불과한 서면검토결과 입력을 굳이 공사에 출근하여 근무시간중에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 하였다.

○상기의 자료에 따르면, 피감사인의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행위(서면검토결과 입력)가 특정시기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, '20.10월부터 '21.06월까지 광범위한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.

□ **허위보고**
(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관련 서면검토결과 입력한 건을, 근무를 마치고 야간에 한 것처럼 허위보고)

○피감사인은 외부강의 신고시, 외부강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감사인의 외부강의실적 총 29건을 「굴착공사 설계 및 시공계획 적정성 검토」라고 표기하여 신고하였다.

□□으로부터 회신받은 프로젝트명과 피감사인이 신고한 외부강의신고건을 대조하기 어려워, 피감사인에게 「□단장에게 내부보고한 외부강의신고서의 문서번호」와 「□□ 프로젝트」가 일대일 대응될 수 있도록 자료작성을 요청하였고, 피감사인으로부터 회신받아, □□ 자료와 피감사인 제출자료를 비교·대조한 결과

피감사인이 근무시간 중에 외부강의 관련 서면검토결과를 입력한 6건 모두가, 근무를 마치고 야간에 외부강의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○□□ 자료와 피감사인 제출자료 비교·대조 내역은 아래와 같다.

○□□ 자료와 피감사인 제출자료 비교·대조 내역

(프로젝트명은 앞선 「피감사인의 근무시간중 외부강의관련 서면검토결과 입력 현황」에서 원래의 명칭을 표시하였으므로, 본 현황표에서는 약칭으로 표시한다)

순번	□□ 자료			피감사인 외부강의신고서 (피감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)		
	프로젝트명	피감사인 전산입력일자 입력상세시간	검토기한	문서번호	외부강의 신고일자	외부강의 일시
1	ㄱ ㄴ ㄷ공원	'21.06.10 15:47	'21.06.11 14시	○부 1022호	'21.06.11	'21.06.11 20시~22시
2	ㄹ ㅁ구역 주택재건	'21.05.07. 11:31	'21.05.07 14시	○부 790호	'21.05.07	'21.05.07 20시~22시
3	ㅂ로 ㅅ구역 ㅇ	'21.04.01 11:20	'21.04.02 14시	○부 528호	'21.04.02	'21.04.02 20시~22시
4	ㅈ ㅊ ㅋ	'21.03.11 11:14	'21.03.12 14시	○부 369호	'21.03.12	'21.03.12 20시~22시
5	ㅌ동 ㅍ,ㅎ	'20.12.09. 17:14	'20.12.10 14시	○부 25호	'21.01.06	'21.01.06. 20시~22시
6	ㄲ선 복선 ㄸ	'20.10.14. 09:02	'20.10.15 14시	○부 1873호	'20.11.03	'20.11.03 21시~24시

○□□ 담당자는 피감사인이 □□에서 지정한 검토기한을 지연하여 서면검토결과를 입력한 사례는 없었다고 '21.12.13. 감사인과 통화 시 답변하였다.

○피감사인의 전산입력상세시간은 피감사인이 최종 입력한 시간이다. 따라서 최종 입력시간으로 표시된 시간 이후에 재입력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.

○상기의 현황표를 보면, 피감사인이 검토기한 전에 근무시간 중 서면검토결과를 입력하여 외부강의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, 외부강의일시를 당일 20시에서 22시로 표시하여 허위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.(순번 1,2,3,4 프로젝트)

○순번 5, 순번 6 프로젝트는 외부강의를 마친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연신고한 건이다. ’20.12.09 17:14 에 서면검토입력한 건 (순번 5 프로젝트), ‘20.10.14 09:02 에 서면검토입력한 건 (순번 6 프로젝트)을 지연신고하면서, 2건 모두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에 20시~22시, 21시~24시에 외부강의(서면검토)를 한 것처럼 허위보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.

□ **외부강의 횟수제한 위반**
(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월 3회 초과 외부강의)

○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7항에 따라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○피감사인은 ‘21.04.02.일 □□으로부터 의뢰받아 개별기준 2건의 서면검토를 하였고, ‘21.04.09.일 개별기준 1건, ’21.04.26.일 개별기준 2건 등 ‘21년 4월에 개별기준 총 5건의 서면검토를 실시하였다.

○외부강의 대가수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, ’20.04.02.일 검토 건에 대하여 2건(세후 273,600원)으로 대가수수, 4.09.일 검토 건에 대하여 1건(세후 136,800원)으로 대가수수, 4.26.일 검토 건에 대하여 2건(세후 273,600원)으로 대가수수 등, 총 5건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□ **외부강의 신고기한 미준수**

○부정청탁금지법 제 10조 제 2항 및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2항에 따르면,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

○피감사인의 ‘21년도 외부강의 점검 대상기간 동안 신고기한 미준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.

○외부강의 신고기한 미준수 현황

순번	외부강의 실시일	청렴감사실 신고기한	청렴감사실 신고일	신고기한 지연일수
1	'20.12.10.	'20.12.21.	'21.01.06.	15일
2	'20.10.28.	'20.11.09.	'21.11.11.	2일
3	'20.10.28.	'20.11.09.	'21.11.11.	2일
4	'20.10.20.	'20.10.30.	'20.11.03.	3일
5	'20.10.15.	'20.10.26.	'20.11.03.	7일
6	'20.10.14.	'20.10.26.	'20.11.03.	7일
7	'20.10.05.	'20.10.15.	'20.10.22.	6일

5. 처분요구사항

□ □단 ◇부(△) A 과장
("감봉 1개월" 및 "감사처분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외부강의 제한")

○피감사인은 직전년도인 '20년도 외부강의 등 신고제도 운영실태 점검 시, 피감사인의 '20년도 외부강의 실적 총 5건중 신고기한 미준수로 2건의 규정위반이 확인되어 "현지시정" 처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

○근무시간내에 외부강의 관련 서면검토결과를 입력(외부강의신고서 기준 총 29건 중 6건)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24조의3(근무시간 내 외부강의·회의 등)을 위반하였고, 위반의 기간도 특정시기에 한정하여 위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, '20년 10월부터 '21년 6월까지 광범위한 기간에 규정위반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.

○피감사인은 근무시간중에 6건의 서면검토결과를 입력하였으나, 고양사업 단장에게 보고하는 외부강의신고서에는 근무시간 후 야간에 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하였다.

○피감사인은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7항에 따라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, 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'21.4월에 총 5회의 서면검토를 실시하였다.

○피감사인은 '21년도 외부강의 점검 대상기간('20.10.월~'21.09월)에 7건의 외부강의 신고기한을 미준수하여 부정청탁금지법 제 10조 제 2항 및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세칙 제 24조 제2항(외부강의를 마친날로부터 10일이내 신고)을 위반하였다.

○피감사인의 위와 같은 규정위반 행위는 「公社 인사규정 제 43조(징계)」 제 1호(법령 및 제규정 위반), 제 2호(직무상 의무 위반)에 해당되고 「公社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9. 징계양정기준 」의 "성실의무 위반" 에 해당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며, 비위의 도와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, 외부강의 신고기한 미준수, 월 횟수제한 초과, 근무시간 중 서면검토결과 입력 행위 등은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, 근무시간 중 서면검토 입력 행위를, 마치 근무시간을 종료하고 야간에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행위는 근무시간중에 외부강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고한 행위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사료됨에 따라, 징계양정 기준 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라 판단되어 **"감봉 1개월 "** 처분한다.

○피감사인은 '20년도 외부강의 실태조사 시 2건의 규정위반으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고, '21년도 외부강의 점검 대상기간('20.10월~21.09월)중, 총 외부강의 실적 29건중 6건의 근무시간 외부강의 행위, 6건의 허위보고, 7건의 신고지연, 월 횟수제한 3회 초과 2건 ('21.4월중 3회 초과하여 5회 실시) 등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중 외부강의 관련 다수의 규정을 위반하였다.

○이는 피감사인이 외부강의를 통하여 대가수수에만 치중하고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등 제반 규정준수를 소홀히한 결과로 판단되며, 이에 따른 피감사인의 만연한 규정위반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리라 판단되어 임직원 행동강령시행세칙 제 24조 제 4항에 따라 피감사인의 외부강의를 제한하며, 제한의 기간은 6개월로 정하여 "감사처분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외부강의 제한" 처분한다.

[□단 ◇부(△) A 과장]

□ 신분상 조치 : "감봉 1개월"

□ 행정상 조치 : "감사처분통지일로부터 외부강의 6개월간 제한" .끝.